



아이돌봄서비스를 받는 아이 학대 예방을 위한 의원발의 법안

글. 법제처 법제조정법제관실

1. 입안배경

지난 4월 서울 금천구에 거주하는 부부가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처벌과 재발방안 수립을 부탁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에 피해사실을 올렸다. 이들은 국민청원에서 ① 영유아 학대 처벌 강화, ② 돌보미 선생님의 자격 심사 강화 및 인성(적성) 검사, ③ 현 연 1회 정기 교육을 3개월 또는 1개월로 횟수를 늘려 인성, 안전 교육 강화, ④ 아이돌봄 신청 시 해당 기간 신청 가정의 CCTV 설치 무상 지원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국민청원은 청원 시작일인 4월 1일부터 마감일인 5월 1일까지 참여인원이 28,1764명에 달하며 국민적 관심과 공감을 얻었다.

이에 여성가족부는 현장 방문, 간담회 등을 통해 현장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4월 25일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했는데, 주요 내용은 ① 선발 시 검증 및 교육강화, ② 이용자 참여 돌봄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③ 아동학대의 철저한 예방 및 엄정 근절, ④ 공공관리체계 강화이다.

첫째, 선발 시 검증 및 교육 강화를 위해 면접 과정에서 아이돌보미 인성, 자질 및 역량을 검증할 수 있는 표준 면접 매뉴얼을 마련하고, 면접 시 아동학대 예방 또는 심리 관련 전문가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아이돌보미 양성 및 보수 교육체계도 전면 개편하여 교육교재에 아동학대 관련 내용을 강화하고 대상 아동 연령별 적합한 내용으로 개편한다고 한다.

둘째, 이용자 참여 돌봄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를 위해서는 아이돌보미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출·퇴근 현황 및 주요 활동 내용, 활동 이력 등을 관리하면서 이용희망 가정에서 서비스 신청 시 연계 아이돌보미의 활동이력, 자격제재 사유 등 정보를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으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 부모가 서비스 이용 후 직접 해당 아이돌보미를 평가하고 의견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아이돌보미 채용 시 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에 대한 사전 동의서를 받고 설치에 동의한 아이돌보미를 영아 대상 서비스에 우선적으로 배치하기로 했다.



최근 입법동향

셋째, 아동학대의 철저한 예방 및 엄정 근절을 위해 아동학대 실태점검 특별신고 창구를 6월 30일까지 운영하고 7월부터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창구로 전화하여 서비스 개선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받고, 정책 개선에 반영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의심 행위로 판단 시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시기자리 늘리고 아동학대 판정 시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기간도 현행 6개 월에서 2년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자격취소 처분의 경우 현재 규정(벌금형 이상 10년, 실형 20년 결격)에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시 자격취소도 추가하여 처분 또는 유예 확정 이후 5년 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이를 금년 내 「아이돌봄지원법」 개정 등을 통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넷째, 공공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 지정을 검토하고 여성가족부와 지원기관, 서비스 수행기관 간 역할의 체계적 분담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직무분석을 통한 적정 인력 수 산정, 행정업무 부담 경감을 위한 업무 전자화를 실시하며, 아이돌보미 양성, 처우 개선, 자격제도 도입을 비롯한 자격관리 강화 등 아이돌보미 전문성 제고 및 처우개선 방안 추진도 향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한다. 또한 아이돌보미 및 기관 종사자가 활동 도중 피로 누적 및 심리적 고충 등을 호소할 경우에는 지역 상담기관 등과 연계하여 상담, 심리치유 프로그램 참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아이돌보미와 기관 종사자 안전 및 인권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매뉴얼(방침)을 마련하고, 이용자와 관계에서 신뢰 회복을 위해 상호 준수해야할 ‘수칙’도 마련하여 배포하기로 했다.

2. 발의 현황 및 주요내용

아동학대 영상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4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아동학대 방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12건이 발의되었다. 여성가족부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발표한 4월 25일 전에 3건이 발의되었고 4월 25일 이후에 9건이 발의되었다. 이들 법안에는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개선대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법안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보라의원 대표발의(2019. 4. 11.)

아이돌보미 채용 시 아이의 부모에게 인적사항, 범죄이력, 돌봄경력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한정하여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도록 하며, 아이를 폭행하거나 절도를 하는 경우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고,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2) 윤호중의원 대표발의(2019. 4. 18.)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하거나 불법행위를 저지를 시 현행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등 「영유아보육법」 상 보육교사 수준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아이돌보미 보수교육 내용 중 아동학대 예방, 아이돌보미 인성 함양 등 필수적인 내용은 법률로 상향하여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3) 강효상의원 대표발의(2019. 4. 24.)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기관이 아이돌보미의 경력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경우 등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 상한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등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4) 이종명의원 대표발의(2019. 5. 2.)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서비스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아이돌봄 지원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5) 박재호의원 대표발의(2019. 5. 2.)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아이돌보미를 영구적으로 할 수 없는 결격사유에 명시하는 한편,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년 범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고, 아이돌보미 인력을 관리 및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가 최근 2년 내에 3회 이상 자격정지 받은 경우 3년 이내 범위에서 서비스 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게 하며, 매년 정기·수시로 아이돌보미 평가 및 실태점검 모니터링 의무화를 통해 제재하는 내용이다.

6) 이혜훈의원 대표발의(2019. 5. 2.)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보미에 대한 보호자의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만족도 조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하며, 인적사항과 돌봄 경력을 비롯한 자격제한 이력이 있을 경우 보호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7) 박선숙의원 대표발의(2019. 5. 16.)

아이돌보미의 주의의무를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되, 주의의무가 아이의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와 관련된 것임을 명확히 하고, 서비스기관에 대해서도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아이돌보미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며, 서비스기관의 지정 취소 사유 중 아이돌보미에 대한 관리소홀의 의미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이다.

8) 임종성의원 대표발의(2019. 5. 21.)

아이돌보미 활동 결격사유에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보호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이 된 자 추가 및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아이돌보미 필수교육과 보수교육에 아동인권과 아동학대 예방, 아동의 안전관리, 아이돌보미의 인성함양 등 포함하며,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최대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보호처분이 확정되거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를 아이돌보미 자격취소 사항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9) 문진국의원 대표발의(2019. 6. 3.)

아동학대 및 성폭력범죄 등을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보호자에게 서비스기관의 지정취소 이력을 안내하도록 하며, 서비스기관은 보호자에게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 이력 정보 등을 제공하여야 하고,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소속 아이돌보미가 자격취소를 받은 경우 해당 서비스기관의 지정을 취소를 하여야 하며,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상한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아이돌보미가 자격정지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임.

10) 송옥주의원 대표발의(2019. 6. 12.)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봄 지원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및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아이돌봄 관리·지원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이돌보미에게 심리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11) 최교일의원 대표발의(2019. 6. 12.)

아동학대 등의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경우에는 일정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아동학대 등의 죄를



최근 입법동향

범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경우 자격을 취소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며, 자격이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하고, 아이돌보미의 자격정지 상한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아이돌보미가 의무적으로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는 내용임.

12) 서영교의원 대표발의(2019. 6. 20.)

여성가족부장관이 실시하는 적성·인성검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사람에 대해 아이돌보미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1회 이상 여성부가족부장관의 정기적인 보수교육 평가 및 점검을 의무화하며,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임대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아이돌보미가 아이를 학대한 경우 현행 1년이었던 자격정지 기간을 2년으로 늘리며, 3년 이상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않는 경우 아이돌보미의 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임.

〈법안별 주요내용 비교〉

구분	선발 시 검증 및 교육 강화	이용자 참여 돌봄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강화	아동학대의 철저한 예방 및 엄정 근절	공공관리체계 강화
신보라의원 (4. 11.)	적성·인성 검사	①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② 인적사항, 범죄경력, 돌봄경력, 돌봄평가 등 정보 제공 ③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지원	학대, 불법행위 필요적 자격취소, 결격사유	
윤호중의원 (4. 18.)	보수교육을 법률로 상향		① 학대·불법행위 자격 정지기간 연장 (1년→2년) ② 자격정지사유 추가 (3년 이내 자격정지 처분, 정지기간 중 업무 수행)	
강효상의원 (4. 24.)		경력정보제공	학대·불법행위 자격정지기간 연장 (1년→2년)	

이종명의원 (5. 2.)			실태조사	
박재호의원 (5. 2.)			① 평가결과 보고 ② 자격취소 영구적 결격사유 ③ 자격정지기간 연장 (1년→2년) ④ 자격정지 2회 필요적 취소 ⑤ 실태점검	
0이혜훈의원 (5. 2.)		① 인적사항, 돌봄경력, 자격정지·취소 이력 등 정보 제공 ② 만족도 조사 및 결과 제공		
박선숙의원 (5. 17.)			① 아이 생명·안전보호 및 위험방지 의무 (아이돌보미) ②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 의의무(서비스기관) ③ 학대 미조치 서비스 기관 지정 임의적 취소	
임종성의원 (5. 21.)	필수교육·보수교육에 아동학대·인성학양 포함		① 아동학대관련 범죄 구류·과료도 결격사유 ② 아동학대관련범죄 보호처분·기소유예 결격사유 ③ 자격정지기간 연장 (1년→2년) ④ 학대로 의심되는 경우 자격정지 여부 결정 전 까지 아이돌봄 활동 정지 ⑤ 아동학대관련범죄 보호처분·기소유예 필요적 자격취소	
문진국의원 (6. 3.)		① 서비스기관 지정취소 이력 안내 ② 아이돌보미 자격정지·자격취소 이력 제공	① 학대·성범죄 형·치료 강호 영구적 결격사유 ② 학대 미조치, 소속 아이돌보미 자격취소를 서비스 기관 지정 임의적 취소 ③ 수시점검 ④ 자격정지기간 연장 (1년→2년) ⑤ 자격정지 2회 필요적 자격취소 ⑥ 실태점검	



최근 입법동향

송옥주의원 (6. 12.)				① 아이돌봄 지원정책 기본계획 ② 연도별 시행계획 ③ 실태조사 ④ 전담기관 지정
최교일의원 (6. 12.)			① 학대·성범죄 형·치료 감호 영구적 결격사유 ② 아동학대관련범죄 기소유예로 자격취소 2년 간 결격사유 ③ 자격취소 결격사유 기간 연장(2년→5년) ④ 건강진단 ⑤ 자격정지기간 연장 (1년→3년) ⑥ 아동학대관련 범죄 기소유예 필요적 자 격취소	
서영교의원 (6. 20.)	① 인성·적성 검사 ② 보수교육 평가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지원	① 아동학대 자격정지 기간 연장(1년→2년) ② 3년 이상 미활동 필요 적 자격취소	
여성가족부 (4. 25.)	① 인성·적성검사 ② 표준면접매뉴얼 ③ 교육교재 개편	① 활동이력, 자격제재 사유 공개 ② 어플리케이션 부모 평가 ③ 서비스 모니터링에 아동학대 항목 추가 ④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의 아이돌보미 우선 배치	① 서비스 이용 불편사항 청구 ② 아동학대 처리절차, 요령 교육 ③ 아동학대 의심 행위 활동정지기간 자격 정지 여부 결정시까지 연장 ④ 자격정지기간 2년 으로 연장 ⑤ 보호처분 또는 기소 유예 시 자격취소 ⑥ 보호처분 또는 기소 유예 확정 이후 5년 간 결격사유	① 아이돌봄서비스 전담 기관 지정 검토 ② 전담인력 수 기능, 업무 전자화 ③ 아이돌보미 전문성 제고 및 처우 개선 방안 추진 검토 ④ 아이돌보미 심리 치유 프로그램 참여 등 지원 ⑤ 안전관리 매뉴얼, 수칙 마련

3. 입법전망

4월 1일 이후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발의된 법률안 12건은 모두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다. 아이돌보미 학대사건이 알려진 후 부모들 걱정을 덜어주고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게 여성가족부에서 대책을 발표하고 국회에서 법안이 발의된 점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추가로 더 많은 법안이 발의되고, 조만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어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리라 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정책이 상당 부분 법안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국회와 정부 간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에 적합한 법안이 통과되어 부모와 아이들이 안심하고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특히, 인·적성 검사를 강화하고 부모들에게 아이돌보미 정보를 제공하며 처벌 및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은 대단히 바람직한 정책으로 본다. 다만, 처벌 강화는 현법 테두리에서 해야 하는데, 기소유예를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결격사유로 규정하면 무죄추정원칙에 비추어 바람직한지, 기소유예만 있으면 무조건 취소해야 한다는 내용보다는 기소유예 내용을 확인하여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좋지 않은지, 자격취소나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을 받은 경우 영구적 결격사유로 규정하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아동복지법」 등에 따른 취업제한·결격사유 기간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은지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